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9.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수정이유

개정안은 지문채취의 주체에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을 추가하고 기존 “검사”는 삭제하지 않고 있는바, 수사와 공소 기능을 분리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취지, 개정 「형사소송법」상 사실관계 확인 및 보완 수사요구 제도, 「공소청법」상 검사의 직무 범위 등을 고려하여 그 주체에서 “검사”를 삭제하려는 것임.

수정주요내용

가. 지문채취 불응죄의 구성요건 중 지문채취의 주체에서 검사를 삭제함(안 제3조제1항제34호).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1항제34호 중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경찰공무원”을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나 경찰공무원이”로 하고, “이나 검사가”를 삭제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3조(경범죄의 종류)	제3조(경범죄의 종류)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① ----- ----- ----- ----- ----- ----- -.	① ----- ----- ----- ----- ----- ----- -.
1. ~ 33. (생략)	1. ~ 33. (현행과 같음)	1. ~ 33 (개정안과 같음)
34. (지문채취 불응)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의 신원을 지문조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서는 확인할 수 없어 <u>경찰 공무원이나 검사</u> 가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에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한 사람	34. ----- ----- ----- ----- ----- -- <u>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경찰 공무원이나 검사</u> 가----- ----- ----- -----	34. ----- ----- ----- ----- ----- -- <u>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나 경찰공무원이</u> -- ----- ----- -----
35. ~ 41. (생략)	35 ~ 41. (현행과 같음)	35 ~ 41 (개정안과 같음)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② · ③ (개정안과 같음)
------------	----------------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347
----------	-------

발의연월일 : 2026. 9. 11.

발 의 자 : 이해식 · 박정현 · 이광희
김영진 · 양부남 · 김영배
권칠승 · 채현일 · 임호선
차지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

지문채취 불응죄의 구성요건 중 주체 부분에서 검사를 삭제함.

법률 제 호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범죄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4호 중 “경찰공무원이나 검사가”를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나 경찰공무원이”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 ----- ----- ----- -.
1. ~ 33. (생략)	1. ~ 33. (현행과 같음)
34. (지문채취 불응)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의 신원을 지문조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 <u>경찰공무원이나 검사가</u>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사람	34. ----- ----- ----- ----- <u>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나 경찰공무원이</u> ----- ----- --
35. ~ 41. (생략)	35. ~ 41.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